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8

발의연월일: 2024. 6. 27.

발 의 자:김선교·구자근·김성원

김정재 · 김상훈 · 이헌승

박수민 · 최수진 · 박준태

박충권 • 박정훈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수 있고,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율은 저조한 상황임.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어 화재사고에 취약한 구조이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2022년도 권익위원회는 전통시장 내 상당수 점포가 보험료 부담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지자체별 지원에 따라 가입율의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화재공제료 지원 및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의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의 일부

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 4조의2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의 제목 중 "지원"을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절차"를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공제료 지원"으로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율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공제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운	제2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운		
영 <u>지원</u>) ① (생 략)	영 <u>지원 등</u>) ①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		
	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		
	재공제 가입율을 높이기 위하		
	여 화재공제 공제료의 일부를		
	<u>지원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u>③</u>		
운영주체, 가입・지원 방법 및			
<u>절차</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공제료 지		
령령으로 정한다.	<u>원</u>		